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에 따르면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에 2022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 추진 필요성

- 2022년에 비해 2023년 전체 참석자 숫자가 높아졌고,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세부 결과는 [별첨 2] 참고)
- 또한,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 위탁함으로써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점검 등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3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교재 제작, 장소 대관, 연수 안내 등)

라. 위탁 기간: 2023. 4. ~ 2023. 12.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현재 수탁기관은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바. 예산 규모: 금164,750,000원(금일억육천사백칠십오만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114,750,000원(금일억일천사백칠십오만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나. 위탁 성과보고서 : 별첨 2

【별첨 1】

관계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1호, 2021. 6. 1., 일부개정]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6. 10.]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94호, 2019. 6. 10., 일부개정]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2022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결과 보고

평생교육과

I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2022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평생교육과-6635, 2022. 3. 29.)

II 2022년 연수 운영 개요

○ 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비 고 |
|-------|--|--|
| 운영 형태 | · 학원 및 교습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 학원단체: (사)한국학원총연합회 · 교습소단체: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
| 연수 대상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외국인강사 | |
| 연수 기간 | · 2022. 8. ~ 12. | |
| 연수 방법 | · 온라인연수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집합연수 실시) | · 2020~2022년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대상 |

○ 연수 주요 내용

- 학원 관련 법령 개정 및 준수 사항
- 주요 민원 및 점검 지적 사례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어린이 안전교육 등
- 시설 및 차량 등 재난 대비 안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교육

Ⅲ 2022년 연수 실시 결과

① 결과 총괄

(단위: 명)

| 구 분 | 연 수 결 과 | | | | 계 | | 외국인강사 | |
|--------------|----------|------------------|-------|-----------------|--------|------------------|-------|---------------|
| | 학원설립·운영자 | | 교 습 자 | | | | | |
| | 대 상 | 참석(%) | 대 상 | 참석(%) | 대 상 | 참석(%) | 대 상 | 참석(%) |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 15,210 | 10,080 (66.2) | | 469* (4.7) | 15,210 | 10,549 (69.3) | 5,321 | 578 (10.8) |
|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 | 0 (0) | 9,787 | 5,833 (59.6) | 9,787 | 5,833 (59.6) | | |
| 계 | 15,210 | 10,080 (66.2) | 9,787 | 6,302 (64.3) | 24,997 | 16,382 (65.5) | 5,321 | 578 (10.8) |

* 각 단체 간 교차이수(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자 연수 이수 가능) 허용

② 최근 3년간 실시 결과

(단위: 명, 천원)

| 구 분 | 운영 형태 | 연 수 결 과 | | | | | | 예 산 액 |
|-------|----------|----------|------------------|--------|-----------------|-------|---------------|---------|
| | | 학원설립·운영자 | | 교 습 자 | | 강 사* | | |
| | | 대 상 | 참석(%) | 대 상 | 참석(%) | 대 상 | 참석(%) | |
| 2020년 | 위탁 | 14,839 | 8,826 (59.5) | 10,076 | 4,684 (46.5) | 0 | 0 (0) | 134,750 |
| 2021년 | 위탁 | 14,739 | 11,073 (75.1) | 10,191 | 4,753 (46.6) | 0 | 0 (0) | 164,750 |
| 2022년 | 위탁 | 15,210 | 10,080 (66.2) | 9,787 | 6,302 (64.3) | 5,321 | 578 (10.8) | 164,750 |

* `20, `21년도는 코로나19로 강사 연수 미운영함, `22년도는 외국인강사 대상 연수 실시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4분기에만 사이버연수로 실시하여 참석률이 낮아짐

Ⅳ 예산 집행 현황

① 총괄 현황

(단위: 원)

| 구 분 | 예 산 집 행 현 황 | | | 비 고 |
|--------------|-------------|-------------|-----------|-------|
| |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 114,750,000 | 105,450,056 | 9,299,944 | 반납 예정 |
|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 50,000,000 | 49,996,510 | 3,490 | 반납 예정 |
| 계 | 164,750,000 | 155,446,566 | 9,303,434 | |

② 연수주관별 정산 내역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1) 예산 집행

(단위: 원)

| 위탁액 | 지출액 | 잔액 (A) | 환수액 (B) | 이자발생액 (C) | 반납금액 (A+B+C) |
|-------------|-------------|-----------|------------|--------------|----------------------|
| 114,750,000 | 105,450,056 | 9,299,944 | - | 39,440 | 9,339,384 ※ 반납 예정 |

※ 상근직원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9,171,840원) 반납으로 2022년 잔액금액 증가

2) 세부 내역

(단위: 원)

| 지출내용 | 지출액 | 정상사용금액 | 환수금액 | 환수금액 내역 | 비고 |
|------------------------|--------------------|--------------------|------|---------|-------------------|
| 강사료 (원고료 포함) | 5,200,000 | 5,200,000 | - | | |
| 인쇄비 | 11,012,100 | 11,012,100 | - | | |
| 물품 보관료 | 6,900,000 | 6,900,000 | - | | |
| 식대 | 4,299,300 | 4,299,300 | - | | |
| 인건비 | 26,812,607 | 26,812,607 | - | | |
| 운영비 (사무운영, 간식 등) | 50,263,778 | 50,263,778 | - | | 사이버연수 관련 비용 포함 |
| 기타부대경비 (통신료, 공과금 등) | 962,271 | 962,271 | - | | |
| 합계 | 105,450,056 | 105,450,056 | | | |

○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1) 예산 집행

(단위: 원)

| 위탁액 | 지출액 | 잔액 (A) | 환수액 (B) | 이자발생액 (C) | 반납금액 (A+B+C) |
|------------|------------|-----------|------------|--------------|-------------------|
| 50,000,000 | 49,996,510 | 3,490 | - | 9,232 | 12,722 ※ 반납 예정 |

2) 세부 내역

(단위: 원)

| 지출내용 | 지출액 | 정상사용금액 | 환수금액 | 환수금액 내역 | 비고 |
|-----------------------|-------------------|-------------------|------|---------|----|
| 강사료 (원고료 포함) | 600,000 | 600,000 | - | | |
| 우편요금 (인쇄비포함) | 14,308,740 | 14,308,740 | - | | |
| 식대 | 1,744,000 | 1,744,000 | - | | |
| 인건비 | 3,709,200 | 3,709,200 | - | | |
| 운영비 (사이버연수 등) | 29,500,000 | 29,500,000 | - | | |
| 기타부대경비 (수수료, 보험 등) | 134,570 | 134,570 | - | | |
| 합계 | 49,996,510 | 49,996,510 | | | |

V 연수 만족도 조사 및 운영 평가 의견

1] 만족도 조사결과

○ 설문 참여 현황

(단위: 명, %)

| 구분 | 연수 참여자 | 응답자 | 응답률 | 비고 |
|----------|--------|-------|------|----|
| 학원설립·운영자 | 10,080 | 7,532 | 74.7 | |
| 교습자 | 6,302 | 5,516 | 87.5 | |

○ 문항별 만족도

(보통 이상 비율, 5점 척도, 단위: %)

| 구분 | 연수장소 (홈페이지) | 연수내용 | 업무 연관성 | 시간배분 | 내용 이해도 | 강사 전문성 | 행정 서비스 |
|----------|----------------|------|-----------|------|-------------|-------------|-----------|
| 학원설립·운영자 | 96.2 | 96.7 | 96.8 | 90.1 | 97.7 | 97.7 | 97.0 |
| 교습자 | 93.3 | 98.6 | 97.8 | 90.2 | 99.1 | 99.1 | 96.4 |

② 운영 평가 의견

○ 문항별 응답 현황

1) 학원설립 · 운영자 대상

(단위: 명, %)

| 평가문항 | 매우만족 | | 만족 | | 보통 | | 불만 | | 매우불만 | | 계 |
|-------------------|------|------|------|------|------|------|------|------|------|------|------|
|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
| 1. 연수 장소의 적합성 | 2960 | 39.3 | 2818 | 37.4 | 1468 | 19.5 | 71 | 0.9 | 215 | 2.9 | 7532 |
| 2. 연수 자료의 충실성 | 2883 | 38.3 | 2988 | 39.7 | 1416 | 18.8 | 81 | 1.1 | 164 | 2.2 | 7532 |
| 3. 업무수행과 연수와의 적절성 | 2752 | 36.5 | 2904 | 38.6 | 1637 | 21.7 | 84 | 1.1 | 155 | 2.1 | 7532 |
| 4. 연수 시간배분의 적절성 | 2306 | 30.6 | 2344 | 31.1 | 2135 | 28.3 | 505 | 6.7 | 242 | 3.2 | 7532 |
| 5. 연수 내용의 이해도 | 2694 | 35.8 | 3175 | 42.2 | 1491 | 19.8 | 41 | 0.5 | 131 | 1.7 | 7532 |
| 6. 강사의 만족도 | 2806 | 37.3 | 3116 | 41.4 | 1435 | 19.1 | 43 | 0.6 | 132 | 1.8 | 7532 |
| 7. 연수담당자의 행정서비스 | 2670 | 35.4 | 2968 | 39.4 | 1669 | 22.2 | 86 | 1.1 | 139 | 1.8 | 7532 |

2) 교습자 대상

(단위: 명, %)

| 평가문항 | 매우만족 | | 만족 | | 보통 | | 불만 | | 매우불만 | | 계 |
|-------------------|------|------|------|------|------|------|------|------|------|------|------|
|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응답 수 | 응답 률 | |
| 1. 연수 장소의 적합성 | 2329 | 42.2 | 2079 | 37.6 | 748 | 13.5 | 183 | 3.3 | 177 | 3.2 | 5516 |
| 2. 연수 자료의 충실성 | 2307 | 41.8 | 2421 | 43.8 | 718 | 13.0 | 43 | 0.8 | 27 | 0.5 | 5516 |
| 3. 업무수행과 연수와의 적절성 | 2096 | 37.9 | 2311 | 41.8 | 1003 | 18.1 | 72 | 1.3 | 34 | 0.6 | 5516 |
| 4. 연수 시간배분의 적절성 | 1572 | 28.4 | 1840 | 33.3 | 1574 | 28.5 | 391 | 7.1 | 139 | 2.5 | 5516 |
| 5. 연수 내용의 이해도 | 2111 | 38.2 | 2592 | 46.9 | 775 | 14.0 | 21 | 0.4 | 17 | 0.2 | 5516 |
| 6. 강사의 만족도 | 2261 | 40.9 | 2548 | 46.1 | 670 | 12.1 | 18 | 0.3 | 19 | 0.3 | 5516 |
| 7. 연수담당자의 행정서비스 | 2019 | 36.6 | 2374 | 43.0 | 927 | 16.8 | 95 | 1.7 | 101 | 1.8 | 5516 |

③ 분석 결과

○ 연수 만족도 높은 수준 유지

- 평가문항별 만족도 2021년과 비교하여 상승 및 하락의 공존

※ 대부분의 만족도가 95%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편

○ 전년대비 참석률 상승

- 2021년에 비해 연수 전체 참석률이 상승하였고, 특히, 교습자의 경우 대폭 상승하였음(교습자 참석률 46.6%→64.3%)

<최근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대상 인원 및 참석 현황>

(단위: 명, %)

| 구분 | 횟수(기간) | 대상인원 | 참석인원 | 참석률 |
|-------|-----------|----------------|--------------|-------------|
| 2020년 | 10월 ~ 12월 | 24,915 | 13,510 | 54.2 |
| 2021년 | 9월 ~ 12월 | 24,930 | 15,826 | 63.5 |
| 2022년 | 8월 ~ 12월 | 24,997(5,321*) | 16,382(578*) | 65.5(10.8*) |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외국인 강사 대상 연수를 2022년 실시함

- (학원설립·운영자) 총 15,210명 중 11,073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전년대비 8.9% 감소하였고, 참석 인원은 404명 감소함
- (교습자) 총 9,787명 중 6,302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고, 참석 인원은 1,549명 증가함
- (내·외국인강사) 외국인 강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실시하지 못한 연수를 2022년도에 다시 시작하여 총 5,321명 중 578명이 참석하였음 내국인 강사의 경우 트래픽(이용자 접속량)비용 문제로 실시하지 못했으나,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법」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여 강사 및 직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 학대 신고의 무자 교육 등)

VI 개선 방향

1 (결과 반영)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2023년 연수 시 반영

○ 연수 만족도 수준 유지

- 현장 사례 중심 내용을 강의안과 교재에 포함하고, 집합연수 시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강의의 전문성이 안배되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외국인강사 대상 연수는 의무사항이므로 2023년에도 반드시 실시하고 이수 여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차세대나이스에 이수 사항 등재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151호, 2021. 4. 13.)에 따라 온라인 연수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신규 학원장 등에 대하여는 집합연수를 실시하여 두가지 형태의 연수를 병행하여 진행

○ 전문성 강화 및 목적에 충실한 연수 실시

- 집합연수 시 목적 외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현장 사례 중심 내용을 강의안과 교재에 포함하고, 집합연수 시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강의의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참여도 제고

- 집합연수 시 장소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교통 요지를 선정하고, 균등하게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위탁연수기관에 요청
- 중간·기말고사, 각종 수시 및 정시 등 대입 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집합연수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
- 온라인 연수시 지속적 안내를 실시하여 연수기간내에 더 많은 대상자들이 연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위탁연수기관에 요청

② (소통 공유) 연수 교재 및 강의안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원 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학원 행정 및 지도 사례를 담당 공무원과 공유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끝.